

[개정특허법]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, 특허심판
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조항 시행일 및 적용범위 부칙내용



- 부 칙 -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실용신안법 일부 동일하게 개정

제3조(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의2(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)

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

한다.

제4조(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)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(징벌적 손해배

상)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변리사23년/변호사 15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